

##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전과) ①전과는 재학기간 중 1학년 2학기 개시전, 2학년 1학기 개시전, 3학년 1학기 개시전에 1회에 한해 신청할수 있으며, 편입생은 3학년 2학기 개시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	제19조(전과) ①전과는 재학기간중 한학기 이상을 수료한 경우 재학기간 중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.
	제19조의 2 (무전공 학부의 학과선택 및 전공배정) ① 무전공학부의 학과선택 및 전공배정을 비롯한 무전공 학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전공학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21조(이수과목) ①전과한 자는 해당학과의 영역별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음악학부에 전과한 자는 전공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②전과한 자의 기 득 학점 중 당해 학과 과목과 유사 공통 되는 과목은 인정 할 수 있다.	제21조(이수과목) ①전과한 자는 해당학과의 영역별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②전과한 자의 기득 학점 중 당해 학과 <b>및 선택한 전공</b> 의 과목과 유사 공통 되는 과목은 인정 할 수 있다.
	제31조의2(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) ① 외국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. ② 외국대학(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)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	제36조의 2(학점인정)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-MOOC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)를 수강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K-MOOC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④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기관,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경험과 학습경험 등이 평가인정을 통하여 입증되면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	부칙 1.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2.(경과조치) 31조의 2(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)에 대한 적용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개정사유: 1. 관련 법령 및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전과에 관한 사항 개정

2.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관련 규정 신설

3. 학점인정에 대한 변화된 학사환경에 대한 인정해주는 조항 포함

☞ 전체구성원 의견수렴:   년   월   일부터   월   일까지 (홈페이지 및 업무용 메신저)

☞ 대학원위원회 심의:   년   월   일   ☞ 기획위원회 심의:   년   월   일

☞ 교무위원회 심의:   년   월   일   ☞ 대학평의위원회 심의:   년   월   일